

의안번호	2126080
의 퇴 인	이주환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28.
추 계 번 호	23F51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조 및 제24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)	○ 순환경제기술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6년말까지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 - 적용기한: 2026.12.31.까지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 및 제24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기술*에 대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시 공제율을 신성장·원천기술 수준으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 및 제24조)

※ 순환경제기술: 2024년 시행 예정인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

- 연구·인력개발비 기본공제율*(%): 기업규모에 따라 2~25 → 20~30

※ 단,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0%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공제 가능

-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(%): 기업규모에 따라 1~10 → 3~12
- 적용기한: 2026.12.31.까지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순환경제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대상이 정해져야 하지만, 현 시점에서 그 범위가 불확실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세액공제 상향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기술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
 - 그러나 개정안의 수혜대상인 순환경제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
 - 2024년 시행 예정인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에도 ‘순환경제기술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, 환경부 문의 결과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아직 규정되지 않음
 - 참고로 순환경제기술을 포함하는 산업인 ‘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’의 2021년 기준 기업체부담 연구개발비 실적과 2023년 설비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의 연구개발비 실적: 2021년

	연구개발 수행기관(개)	자체부담 연구개발비(A, 억원)	매출액(B, 억원)	A/B(%)
기업체 계	223	556	39,852	1.39
대기업	6	123	3,546	3.47
중견기업	6	20	7,008	0.29
중소기업	156	283	18,561	1.52
벤처기업	55	130	10,737	1.21

자료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」, 2023.2.

[표 3]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의 설비투자계획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(실적)	2022(잠정)	2023(계획)
기업체 계	1,017	1,466	798
5,000명 이상	—	—	—
1,000~5,000명	8	8	8
300~1,000명	410	503	481
300명 미만	599	955	309

자료: KDB산업은행, 「2022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」, 2022.12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